산업통상부고시 제2026-OO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OO월 OO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녹지구역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경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대상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서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하여 사후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산업시설구역의 임대사업 관리)”를 “(산업시설구역등의

임대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의”를 “산업시설구역등에서”로 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요건은 제9조제6항을 준용하며, 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연접한 입주기업체는 도로, 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반대쪽 산업용지에 입주한 자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 운영위원회” 결과를 첨부하여”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① 삭 제 ②·③ (생 략) <신 설>	제6조(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녹지구역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경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대상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⑤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서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하여 사후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13조(산업시설구역의 임대사업 관리) ① 법 제38조의2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건축물 등에 다수가 동시에 입주한 경우에는 그 입주자 공동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내용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자 및 대표자, 관리규약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산업시설구역등의 임대사업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에서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연접한 입주기업체에는

	도로, 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반대쪽 산업용지에 입주한 자도 포함하며, 부대시설은 제9조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의2(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 ①·② (생 략) ③ 심의회의 안건상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 운영위원회" 결과를 첨부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신청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15조의2제5항을 따른다. 1.·2. (생 략) ④ ~ ⑥ (생 략)	제15조의2(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한국산업단지공단----------. 1.·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산업단지 관리지침[별표 1]

산업집적법상 업종명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건축 면적률(%)
전기업	35113	화력발전업	20
	35114	태양력 발전업	20
	35115	풍력 발전업	20
	35119	기타발전업	20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25
	353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0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37012	폐수 처리업	35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110	지정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20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25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25
	38311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20
	38312	금속류 원료 재생업	20
	38321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25
	38322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25
운송업	4930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20
	49302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20
	49500	파이프라인 운송업	20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20
	50209	기타 내륙 수상여객 및 화물 운송업	20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52104	위험물품 보관업	25
	5210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35
	52913	물류 터미널 운영업	2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20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20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20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20
	72911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20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76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30
-	84229	기타산업진흥행정	20
교육서비스업	85302	대학교	20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6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17.5. 29 >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현황	소재지			
	입주 업종 (분류번호)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구분	관련 법령(적용대상)	관련 법령 적용 여부	인허가 여부 또는 관련 법령(조항) 준수여부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인화·발화성 물질 등)		
	유독물	화학물질관리법(유독물질 등)		
	고압가스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압·독성가스 등)		
	전기	전기안전관리법(전기, 전기설비 등)		
	작업장 환경	산업안전보건법(제조등금지물질, 허가대상 물질 등)		
	화학폭약물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약, 폭약 등)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특정대기유해물질 등)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특정수질유해물질 등)		
	내진설계	건축법(건축물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저장탱크 등), 산업안전보건법(크레인 등) 등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령		
	기타			

안전관련 비상연락망	※ 인허가기관, 인근 병원 및 소방서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계획	※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계획(긴급상황 전파, 근로자 대피, 소화기 사용 등)을 간략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	※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운영,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지진대응 매뉴얼 운영, 지진대응 안전교육 등)을 간략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기업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210㎜×297㎜(백상지 80g/㎡)